

## □ 미래대응·미해결 중점분야

제안요청서	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-미래대응·미해결	공모 유형	품목지정형	기술료 납부대상	○
사업 유형 해당여부	해당사항 없음				

### ▶ 지원 목적

- 미래대응·미해결 감염병 신규 백신 개발

### ▶ 지원 대상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·학·연·병 모두 가능
  - 기업이 주관으로 참여 필수
-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'신청요건' 부분 참고

### ▶ 지원 규모

중점기술	지원분야	지원 기간	연간연구비 (1차년도)	협약 형태	선정 예정 과제 수
SFTS 예방	신규플랫폼	3년 이내	700백만원 (525백만원)	다년도	3
노로바이러스 장염	신규플랫폼	3년 이내	700백만원 (525백만원)	다년도	2

- ※ 1차년도 연구기간 9개월 이내, 팔호 안 금액은 1차년도(9개월) 최대 지원 금액임. 선정 과제 수는 접수현황, 경쟁률 등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
- ※ 1차년도('22.4~12.), 2차년도('23.1~12.), 3차년도('24.1~12.)이며, 협약시점이 변동되어도 연구완료시점의 변동 없음. 협약시점 변동에 따른 1차년도 연구비 지급액 변동 가능
- ※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

### ▶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(예시)

중점기술	지원분야	성과목표	지원 내용(예시)
SFTS 예방	신규플랫폼	임상1상 IND 승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신규플랫폼 기반 (핵산형, 바이러스입자형, 약독화형 등) 백신후보 확보</li> <li>▪ 추가/교차 접종에 의한 방어능 및 방어기간 개선평가</li> <li>▪ 동물감염모델 기반 유효성 확립</li> <li>▪ 면역원성·역가 평기방법 구축</li> <li>▪ 비임상 시험 완료 및 임상1상 승인서 확보 등</li> </ul>
노로바이러스 장염	신규플랫폼	임상1상 IND 승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신규플랫폼 기반 노로바이러스 백신후보항원 VLP 제형 (2가 이상) 확보</li> <li>▪ 백신 생산성 향상, VLP 성상, 순도제고 등 정제 공정개선</li> <li>▪ 감염성 바이러스 사용 대체형 백신효능 평가 기술 확립</li> <li>▪ 안전성/유효성 평가를 포함하는 비임상 시험 및 임상 1상 승인서 확보 등</li> </ul>

- ※ 제시된 성과목표는 포함되어야 하며 제시된 성과목표 이외 추가성과는 과제별 추가 작성 가능
- ※ 성과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제시할 경우, 연구진행에 따른 서류 필수 제출  
(예시. 임상1상 완료 후 임상2상 IND 승인을 목표로 할 경우 : 임상1상 IND 승인서 필수 제출)
- ※ 중점분야 및 중점기술이 다를 경우 중복지원 가능(다만, 혁신법에 따른 3책 5공 준용)
- ※ 현재 관련연구(선행연구)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과제신청이 가능하며, 선행 연구 결과를 신청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(선행연구 종료기간 : 본 연구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)

## ▶ 특기사항

-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주요사항
  - 기술성숙도(TRL)에 근거,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제시
  -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및 참여연구진간의 구체적인 역할 배분 및 협력 방안 제시
  - 총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마일스톤(정량지표)을 제시
- ※ 마일스톤은 연구개발 단계별로 달성해야만 하는 주요한 기술적인 실적으로 평가를 통해 실적 달성여부를 판단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예정
- 과제신청 시 임상시험을 실시할 과제의 경우, 해당국가 규제기관(예: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, 미국 FDA)으로부터의 임상시험용 의약품(IND) 승인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(임상시험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)를 제출하여야 함(예비선정공고 종료일까지 미제출시 선정 제외)
- 과제 선정 후 연구책임자는 연구 네트워크 구축, 성과교류 및 확산 등을 위한 중점분야별 협의체 구성·운영에 참여해야하며, 해당 협의체 참여 실적은 향후 평가에 반영함
- 일반적인 사항은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평가, 연구개발비, 기술료 지침」 참고

## ▶ 선정평가 기준

적용가점	해당사항 없음
------	---------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
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	대항목	소항목
서면·구두 평가	1. 연구계획의 적절성(5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(20)</li><li>○ 연구내용의 우수성(20)</li><li>○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(10)</li></ul>
	2. 주관연구책임자·기관의 역량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주관연구책임자·기관의 전문성 및 과제수행 능력(10)</li><li>○ 주관연구책임자·기관의 연구실적의 탁월성 및 우수성(10)</li><li>○ 주관연구책임자·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실적 및 파급효과(10)</li></ul>
	3. 연구개발 기대성과·파급효과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연구의 성공가능성(5)</li><li>○ 연구결과의 파급효과(5)</li><li>○ 특허 조사 및 특허회피 가능성(10)</li></ul>